

#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42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9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## 1. 개정이유

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던 글로벌도시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한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0조(※붙임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마. 기타사항

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8. 10. ~ 8. 3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4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
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6)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9조(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) ①</u>  <u>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투명</u>  <u>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</u>  <u>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심의위</u>  <u>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</u>  <u>둔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  <u>조정 및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</u></li> <li><u>2.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</u>  <u>중 시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</u>  <u>항</u></li> <li><u>3.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</u>  <u>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</u>  <u>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</u></li> </ol> <p><u>③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「대</u>  <u>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」</u>  <u>에 따른 글로벌도시위원회에서 대</u>  <u>행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-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한 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경제국 국제통상과장 이 기 석